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해 양 이 용 영 향 평 가 법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 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하여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제정(법률 제19910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시행령 목적

나. 해양이용협의의 대상 및 절차(제2조~제5조)

-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협의서 전문검토기관을 지정함

다.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심의, 평가서 초안 및 의견수렴(제6조~제12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구성, 관계 행정기관의 장,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기간 등 방법,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방법, 설명회·공청회 개최 및 생략 기준, 중요 사항 변경에 대한 의견제청취 기준

라. 해양이용영향평가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제13조~제19조)

-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 평가서 전문검토기관, 의견통보 기간 및 이의신청, 재협의 대상, 해양환경보전방안 내용 및 검토, 협의 의견 관리대장 작성 예외 대상

마. 평가서 작성 대행,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평가대행자 선정 사업(제20조~제22조)

-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분리 대상, 사업수행 능력 평가 기관 및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바. 정보지원시스템, 전문인력 양성기관(제23조~제24조)

-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서류

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제25조~제27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사항,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사무

아.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 과태료 부과기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제2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 수질오염 방지막 등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사업
2. 부유식 등부표, 원기등 부표 등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사업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개장기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다 또는 바닷가나 백사장에서

의 차양막 등 이동시설물의 설치 사업

③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이하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이라 한다)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하 “일반 해양이용협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 및 주변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 대상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해양이용협의 절차)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협의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4조(협의서의 검토기관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한다)의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환경 및 해양정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심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 해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며,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처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명 이상
4.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5. 해당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1명 이상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1명 이상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

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고·공람) ① 처분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 지역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사업의 개요

2. 평가서 초안의 확인 방법

3.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장소

4.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 및 공청회의 시기 및 장소

② 처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공람장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제9조(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방법 등) ①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해양 환경 영향 및 보전방안,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받은 의견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설명회의 개최한 날부터 7일 전까지 사업개요,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지역신문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

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에 따른 주민공람의 기회에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9조에 따른 주민공람의 기회에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수가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개최한 날부터 14일 전까지 사업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결과를 처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사업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를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설명회및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이하 “설명회등”이라 한다)를 생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1.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등을 생략하게 된 사유, 사업설명 자료 및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2.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등을 생략하게 된 사유, 사업설명 자료 및 열람방법 등을 게시

제12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청취)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경되는 사업규모가 별표 2에 따른 최소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된 범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3.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의견 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①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하며, 대상사업별 협의 요청 기한은 별표 2와 같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기관의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평가서 검토 과정의 의견 청취)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5.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15조(의견통보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서류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의 의견통보기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의 복구를 위한 해양이용협의를 경우에는 15일) 까지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의 의견통보기간: 요청받은 날부터 45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의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변경하려는 협의의견 및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재협의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4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공정(공사진도·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

제18조(해양환경보전방안의 내용 및 검토) ① 해양환경보전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②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의견에 포함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유사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추가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
2.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해양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후 사업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 가. 평가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한 경우를 포함한다)
 - 나. 협의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의의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추가적인 저감방안 마련 등 해양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전문

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으려면 사업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관리대장의 작성 예외)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을 말한다.

제3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대행

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21조(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단체) 법 제31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제22조(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 채취사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사업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의 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평가대행자 선정

2. 평가대행자 용역 계약의 관리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은 제4항의 제2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

업자 및 평가대행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평가대행자 선정기준, 선정절차, 계약관리 및 선정비용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및 관리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
2. 법 제47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기관은 정보지원시스템 정보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연계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의 연계 활용에 협조해야 한다.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

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1. 교육 인력·시설·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해양이용영향평가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제2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처분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거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협의서의 접수
 - 나. 법 제12조에 따른 협의서의 검토·보완·조정 및 반려
2. 법 제13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처분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거나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중 해상풍력설비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의 접수
 -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 및 평가항목등의 결정·통보
 - 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공개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라. 법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 제출
- 마.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의 접수
- 바. 법 제20조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보완·조정 및 반려
-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의 통보 및 연장기간의 통보
- 4.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면허등 통보의 접수
- 5. 법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검토·통보
- 6.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의의견의 반영 요청
- 7. 법 제2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통보의 접수 및 조치명령의 요청
- 8.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협의를 변경협의를 요청의 접수
- 9.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요청
- 10.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 통보
- 11.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 1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 관리 담당자의 지정 및 관리대장의 확인
- 1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 1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 15.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및 제6항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 여부 확인 결과 통보의 접수

16.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의 접수 및 조치 결과 통보의 접수
 17.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조치 결과의 검토 및 조치의 요청
 18.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19.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20.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등 조치의 요청
 21.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내용 통보의 접수
 22.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24.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휴업 신고의 접수
 2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26.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대행업무 계약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 제한
 27.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보고 접수, 자료 제출의 요청 및 출입·조사
 28.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29.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현황 및 대행업무 실적 관리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대행업무 실적 보고 접수 및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의 공고
3.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 제47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 장관(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휴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관리 및 대행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제5장 별칙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양이용협의를 위한 서류(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양이용협의를 위한 서류(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⑤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을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한다.

⑥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⑦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⑧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중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을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한다.

⑨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6호 중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로 한다.

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를”로 한다.

⑫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대행

제94조제4항제11호부터 제14호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6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15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9호의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를”로 하고, 제10호의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로 하며, 제11호의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로 한다.
별지 제46의2서식부터 제5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제11호나목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제3조제3항 및 제4조 관련)

1. 일반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구 분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바다 골재 의 채취	<p>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영해 안에서 채취량이 20만^m 미만인 경우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채취량이 40만^m 미만인 경우. 다만, 나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해양이용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p>
공유 수면 의 점용· 사용	<p>가. 「항만법」 제2조제5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류(繫留)시설·외곽시설로서·임항교통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또는 면적 3천^m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2)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3천^m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3) 항만 및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5만^m 이상 또는 준설량이 10만^m 이상인 경우. 다만, 항로 등의 유지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5만^m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p>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곽시설로 또는 계류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또는 면적 3천^m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2)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3천^m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3) 어항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5만^m 이상 또는 준설량이 10만^m 이상인 경우. 다만, 어항 등의 유지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공유수면 5만^m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p>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p>

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서 길이 150m 이상 또는 면적 3천㎡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로서 면적이 5만㎡ 이상 또는 굴착량이 10만㎡ 이상인 경우
-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로서 그 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 또는 그 양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경우(「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의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 면적이 10만㎡ 이상 또는 그 양이 20만㎡ 이상인 경우). 다만, 항로 등의 유지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포락지·간석지의 토지조성사업
- 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바닷물 또는 오수(汚水)를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로서 관의 지름이 400mm 이상이고, 관의 길이가 150m 이상이며, 면적이 3천㎡ 이상인 경우.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로서 영해에서 채취량이 20만㎡ 미만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채취량이 40만㎡ 미만인 경우
-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로서 그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다만, 해당 사업범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영해에서 투기량이 20만㎡ 미만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투기량이 40만㎡ 미만인 경우. 다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공유수면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카.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영해에서 채취면적이 10만㎡ 미만이거나 또는 채취량이 20만㎡ 미만인 경우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채취면적이 20만㎡ 미만이거나 또는 채취량이 40만㎡ 미만인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바다·바닷가에서의 매립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양이용협의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면허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28조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위 표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바다·바닷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3. 간이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 가.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범위 미만의 사업
- 나.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사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 라.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에서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 면허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신청, 「수산업법」 제14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름)
- 마. 바지선 및 해상크레인(자체 동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등 인공구조물의 설치 없이 공유수면을 60일 이내에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름)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 가.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가,나,마,자목 및 차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나.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수질오염 방지막 등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사업
 - 다. 부유식(浮游式) 등부표(燈浮標), 원기등 부표 등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사업
 - 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개장기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다 또는 바닷가나 백사장에서의 차양막 등 이동시설물의 설치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바다 골재의 채취	<p>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 사업으로서 영해는 채취량이 20만^m 이상,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채취량이 40만^m 이상인 경우. 다만, 나목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모든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p>	<p>「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p> <p>「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p>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p>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사업으로서 면적 10만^m 이상 또는 물량 20만^m 이상인 경우. 다만, 항로 등의 유지를 위한 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영해는 채취량 20만^m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은 채취량 40만^m 이상인 경우</p> <p>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영해는 물량 20만^m 이상,</p>	<p>「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전</p> <p>「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전</p> <p>「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전</p>

	<p>배타적 경제수역은 물량 40만m^3 이상인 경우. 다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공유수면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라.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300m 이상 외곽시설.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라 호안(護岸)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연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전</p>
3. 광물채취	<p>가.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영해에서 채취면적이 10만m^2 이상이거나 또는 채취량이 20만m^3 이상인 경우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채취면적이 20만m^2 이상이거나 또는 채취량이 40만m^3 이상인 경우</p>	<p>「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하기 전</p>
4. 에너지 개발	<p>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시설 용량 10만kW 미만인 경우</p> <p>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소)수력, 해양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면적 10만m^2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p>	<p>「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 계획의 인가 전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 계획의 인가 전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5. 해양심층수 개발	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개발하는 사업으로서 1일 취수량 5만 ^{m³} 이상인 경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 전
6. 해양투기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고립처분 하는 모든 면적 및 폐기량의 사업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를 해양지중으로 저장하는 모든 용량의 사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전
7. 해저광물자원 개발	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 설정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채취권의 변경신고 수리 전
8. 그 밖의 개발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양자원을 이용·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영해는 이용·개발면적 10만 ^{m²} 이상이거나 이용·개발량 20만 ^{m³}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은 이용·개발면적 20만 ^{m²} 이상이거나 이용·개발량 40만 ^{m³} 이상인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전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허 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 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 시기는 가장 먼저 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나. 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 등의 당시에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었어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규모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5. 같은 영향권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을 2인 이상이 시행할 때에는 사업규모의 합이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면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 경우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p>가. 법 제2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p> <p>나.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p> <p>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p> <p>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p> <p>마.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p>	<p>법 제54조제1항</p>	<p>2,500</p>	<p>3,500</p>	<p>5,000</p>
<p>바.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p>	<p>법 제54조제2항</p>	<p>1,000</p>	<p>1,500</p>	<p>2,000</p>
<p>사. 법 제2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p> <p>아.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p> <p>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차.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한 계약을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p>	<p>법 제54조제3항</p>	<p>500</p>	<p>700</p>	<p>1,000</p>

<p>도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p> <p>카.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작성을 대행한 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대행시킨 사업자</p> <p>타. 법 제35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p> <p>파. 법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보지원시스템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p>				
<p>하.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 준공, 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거.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에 협의의견의 이행 여부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사업자.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너.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p> <p>더.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평가대행자</p> <p>러.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며.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p>	<p>법 제54조제4항</p>	<p>200</p>	<p>300</p>	<p>500</p>

주민의견 제출서			
① 사 업 명			
② 사 업 장 위 치			
③ 사 업 자			
④ 의 건 제 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⑤ 해양이용영향 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			
⑥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개최 필요여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 유: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기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처분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인원			
발언요지 및 사업자 의견 (발언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	발언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발언요지		
	사업자 의견		
	발언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발언요지		
	사업자 의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처분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포함) 명단 1부		
처리절차			
공청회 개최 요구 주민	➔	접수 처분기관의 장	➔
		공청회 개최 사업자	➔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 사업자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생년월일
	주소(법인·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변경하려는 협의의견	※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짜 명시합니다(협의의견을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변경에 따른 영향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사업자	→ 접수 처분기관의 장	→ 검토 해양수산부장관
신청서 작성 처분기관의 장	→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 검토 해양수산부장관
	→ 결정 해양수산부장관	→ 결과통보 해양수산부장관
	→ 결정 해양수산부장관	→ 결과통보 해양수산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 청 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총 사 업 규 모 액	
	사 업 기 간	사 업 현 장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귀 기관의 평가대행자 선정에 참가하고자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을 합니다.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용역개요, 과업지시서 각 1부)
 2. 계약특수조건(필요시) 1부
 3. 그 밖의 참고사항(평가대행금액 산출내역, 기술자 배치계획 등) 1부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기관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주소)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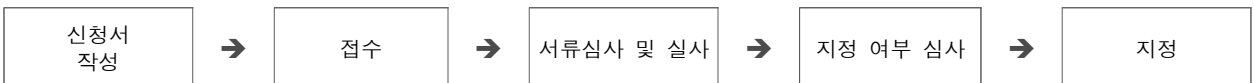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교육 인력·시설·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해양이용영향평가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장관